

주 폴란드 · 스페인 한국문화원 종합감사 결과보고

가. 감사개요

■ 감사기간 : 2014. 4. 3. ~ 4. 16. (10일간)

- 주 폴란드 한국문화원 : 2014. 4. 3. ~ 4. 9. (5일간)
- 주 스페인 한국문화원 : 2014. 4. 10. ~ 4. 16. (5일간)

■ 감 사 반 : 감사담당관 외 2명 (실지감사)

■ 감사내용

- 2011년 ~ 2014년 현재까지 기관 및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

나. 감사결과

(단위 : 건, 천원)

기관	합 계			신분상 조치		재정상 조치		행정상 조치			
	건수	금액	인원	건수	인원	건수	금액	시정	주의	개선	통보
								건수	건수	건수	건수
해외문화홍보원	1										1
주 폴란드 한국문화원	5	566				1	566	1	1		2
주 스페인 한국문화원	5								4		1
합 계	11	566				1	566	1	5		4

감사처분 요구내용

[해외문화홍보원]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1	<p>○ 해외 송금업무 처리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41개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중 16개 기관은 현지화로 예산을 송금하나, 25개 기관에는 달러화로 예산 송금 - 25개 기관 중에서 17개는 거래은행에서 현지화 송금이 가능함에도 달러화로 예산을 송금하여 문화원 등에서 달러화 예산을 다시 현지화로 환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전수수료('13년 116,507천 원) 추가 발생 	<p>○ 통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화원 등에 예산 송금 시 주재국 통화로 송금

[주 폴란드 한국문화원]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2	<p>○ 행정직원 퇴직금 및 상여금 과다 지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재외공관 행정직원 보수 운영지침」 및 「주 폴란드 대사관 운영내규」 제15조(퇴직)에 따라 퇴직기간 산정은 최소 월단위로 하며, 월 25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1개월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직원 퇴직 시 근무기간이 19일에 불과한 월을 1개월로 인정하여 퇴직금 등 566천 원(퇴직금 294천 원 + 상여금 272천 원) 과다지급 	<p>○ 시정 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다 지급한 퇴직금 565,690원 환수
3	<p>○ 행정직원 성과평가 및 고용계약 업무추진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재외공관 행정직원 보수 운영지침」에 따라 행정직원과 고용계약은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 내역 변경 시 본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행정직원 성과평가는 2011년에 단 1회만 실시 · 최초 고용계약 체결이후 구두로만 계약을 연장 · 행정직원 월급 변경 시 고용계약서 미작성 및 본부 승인 미요청 	<p>○ 시정 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속 고용의사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고용계약서 재작성 - 직원 성과평가 및 고용계약시 관련규정 준수 촉구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4	<p>○ 홈페이지 및 도서실 운영 미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화원 주관 각종 사업 및 행사 등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전달 미흡 · 홈페이지 일부 메뉴에 내용이 아예 없거나 오류메시지 나타남 · 폴란드어 홈페이지에 도서신간 안내를 한국어로 게재 · 2013년 문화원 사업, 행사 등은 총 26건임에도 한국어 홈페이지에 등재한 관련 게시물은 11건(42.3%), 폴란드어 홈페이지에 등재한 게시물은 19건(73%) - 홈페이지 방문자 질의에 대한 대응노력이 부족(답변 평균 소요일 62.75일, 3년 도과한 미답변 질의 2건) ※ 민원처리시한 7일 - 폴란드어로 번역된 한국문학 40종 중 문화원 보유도서는 14종에 불과하며, 홈페이지에 번역도서 목록이나 폴란드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영화 DVD목록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미흡 	<p>○ 주의 요구 및 통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효율적인 홈페이지 및 도서실 운영 강화방안 마련 요구 - 관련 규정에 따라 민원업무 처리를 철저히 요구
5	<p>○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한류소개 행사 개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2년부터 국내외 유관기관 공동으로 한국 문화 및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<코리아 페스티벌 행사>를 개최,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류 확산에 기여했으며, 특히 문화 소외 계층인 양로원과 고아원 등을 직접 <찾아가는 한국문화원>을 운영, 양국 우호 증진에도 기여함 	<p>○ 모범사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류 붐 조성에 기여하도록 전파

[주 스페인 한국문화원]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6	<p>○ 임대차 계약관리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화원에서 임대차계약서 제4조 6호에 따라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증명서를 스페인 국세청에서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었음에도 문화원은 임차료 부가가치세 면제 증명서를 '임대인'에게 제출하지 않는 등 계약관리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가가치세 42,711유로를 납부하게 되어 약 61,442천원 예산낭비 초래 	<p>○ 주의 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대차계약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7	<p>○ ‘한식강좌용 주방시설 공사’ 예산집행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국가재정법」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, 외교부에서 통보한 「재외공관 회계업무 처리지침」의 ‘XII. 재외공관 경비집행’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는 본부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비목간 전용은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한식강좌용 주방 시설을 설치하면서 시설비 부족을 이유로 주방시설 공사비 19,120유로(27,505천 원) 중 14,190유로(20,413천 원)를 전용절차 없이 일반수용비로 집행 	<p>○ 주의 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서운영경비를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전용절차를 준수
8	<p>○ 관서운영경비 집행 및 수입금 관리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국고금관리법」 제4조, 제24조에 따라 모든 관서운영경비를 지출할 경우 지급원인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문화원에서는 세종학당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출, 물품 비용 지출 등 일상적 경비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 지급원인행위 없이 관서운영경비 지출 (‘13년 예산 1,383백만원 중 1,273백만 원 / 92.1%) - 「재외공관회계사무처리규정」 제7조에 따라 수입금의 변동사항(징수, 환급, 납입, 환전 등)은 결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한국어 강좌, 문화강좌 등에서 발생한 수입금에 대해 사전 품의서 및 결의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엑셀표나 종이 수기 수불대장으로 관리함 	<p>○ 주의 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입금 및 관서운영경비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촉구
9	<p>○ 행정직원 관리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관행정내규 등에 따라 매년 12월에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직원의 근무평정을 ‘11. 6월 개원 이후 한번도 실시하지 않음 - ‘재외공관 행정직원 보수 운영지침’에 의거 외국인 행정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는 주거보조비 €400(575천 원)를 외국인 행정직원 고용계약을 체결한 직원 5명에게 인금인상의 수단으로 ‘13년 10월부터 매월 지급 <p>※ 행정직원 5명 중 4명의 국적은 한국이나 주재국민과 결혼 등의 이유로 현지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외국인 고용계약을 체결</p>	<p>○ 주의 요구 및 통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정직원에게 대한 고용계약 및 성과평가 등 관련 규정 철저히 준수 - 주거보조비를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한 다른 수단으로 대체